

의안번호	2205327
의 퇴 인	임이자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 계 번호	24B487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6,000만원, 2030년 4억 8,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700만원(연평균 4,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 (안 제41조의2제3항 신설) -우수 생태관광지역 포상	5	5	5	5	5	25	5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안 제41조의3제1항 신설) -인증 심사	31	34	36	39	43	182	36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등(안 제41조 의4 신설) -홈페이지 기능 개선	10	—	—	—	—	10	2
합계	46	39	41	44	48	217	43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 신설(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u>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u>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u>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u>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지역에서 운영중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u>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제1항)</u>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41조의4 신설(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u>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4	안 제41조의5 신설(생태관광 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u>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u>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u>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u>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3항)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분석·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2 신설(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	—	(제1항)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성과 평가 • 미대상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예산으로 생태관광지역 대상 운영·평가를 추진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제9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개요> <table><tr><td>사업명</td><td>제9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td></tr><tr><td>계약금액</td><td>62백만원 ※ 예산과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833-301) 내 일반용역비</td></tr><tr><td>사업기간</td><td>'24.10.8. ~ '25.5.5.</td></tr><tr><td>과업내용</td><td>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수준 진단 및 생태관광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방향 제시 등 컨설팅 실시</td></tr></table>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사업명	제9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계약금액	62백만원 ※ 예산과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833-301) 내 일반용역비	사업기간	'24.10.8. ~ '25.5.5.	과업내용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수준 진단 및 생태관광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방향 제시 등 컨설팅 실시
		사업명	제9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계약금액	62백만원 ※ 예산과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833-301) 내 일반용역비										
사업기간	'24.10.8. ~ '25.5.5.										
과업내용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수준 진단 및 생태관광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방향 제시 등 컨설팅 실시										
		○	(제3항) 우수평가 생태관광지역 포상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	(제1항)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	(제5항)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향후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을 받게될 생태관광지역 및 재정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41조의4 신설(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41조의5 신설(생태관광 국제협력)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 국제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국제 생태관광 동향조사 대상국 및 생태관광 국제교류 지원 인원수 등 구체적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지원 개요

- 환경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중
- (지정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¹⁾
 - (선정기준) 6개 항목*에 대한 충족 여부 검토
 - * ① 자연·생태적 보전가치, ② 시설의 생태적 설계, ③ 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④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⑤ 장단기 보전 및 관리전략·계획, ⑥ 생태관광 추진의지와 협력 기반 등

1) 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생태관광지역 1개소당 42백만원 보조('24년 기준)
 - (주요사업)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추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설치·관리, 주민 교육·홍보 및 보전활동 진행 등
 - (지정현황) 총 35개소의 생태관광지역 지정('24.11월 기준)
- ※ [참고자료]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참고

[표 2]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2024년 11월 기준, 단위: 개소)

지정년도	지정 수	생태관광지역
2013	12	• 부산 낙동강하구 • 울산 태화강 등
2014	5	• 경기 안산 대부도 • 강원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등
2015	3	• 전남 신안 영산도 • 전남 완도 완도 상서마을 등
2018	6	•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등
2021	3	• 인천 백령도 •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등
2023	6	•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 •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등
합계	3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 (평가방법) 문헌 조사, 현장평가, 심층 인터뷰 등 진행
- (평가주기) 3년
- (평가항목)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항목(2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족 여부 검토
- (수행기관) (사)한국생태관광협회('24년 제8차 운영평가 기준)

□ 최근 4년간('22~'25년) 생태관광지역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생태관광지역 관련 사업 예산 환경: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 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지원) (1833-301)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운영	생태관광지역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 기반시설 설치·관 리 등 지원	1,247	1,305	1,440	1,440
-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 영 및 홍보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용 역 추진	901	1,220	1,203	1,1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나.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우수 생태관광지역 포상(안 제41조의2 제3항 신설)

□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 1개소에 대해 포상 예정

- 환경부 내 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하여 1개소당 포상비용은 500만원으로 가정(환경부 제출자료)²⁾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포상 대상 생태관광지역 수 및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환경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2,500만원으로 추계됨

2) 환경부 내 포상금 참고 사례(최우수, 1등, 대상 등 최고금액 기준)

- 수질TMS 측정자료 활용 우수사례: 200만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우수 지자체: 1,500만원
-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우수 지자체: 2,000만원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 우수 지자체: 600만원

[표 4] 우수 생태관광지역 포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포상대상 지역(A, 개소)	1	1	1	1	1	
포상금 지급단가 (B, 백만원/개소)	5	5	5	5	5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5	5	5	5	5	2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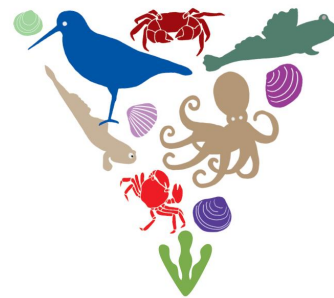
다.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안 제41조의3제1항 신설)

□ 환경부에 따르면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심사·관리비 등이 발생함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가 제출한 ‘갯벌생태관광 인증’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³⁾를 시행중
 - (인증 수수료) 신규 신청 50만원,
 - 갱신 신청 30만원⁴⁾
 - (인증 유효기간) 3년⁵⁾

[그림 1] 갯벌생태관광 인증 표시

·갯벌생태관광인증·



□ 따라서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대상 프로그램 수 및 인증비용은 다음과 같이 가정

- (인증 비용) 프로그램 1건당 50만으로 가정
 - 갯벌생태관광 신규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인증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4)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별표 3]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호, 2021. 1. 4., 제정]

5)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이 만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가정
 - 갯벌생태관광 인증 유효기간 3년 준용
- (인증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 2024년 기준, 35개 생태관광지역에서 158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중
 -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가정한 것을 고려하여 전체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1/3 규모를 인증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매년 8.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최근 10년('14~'23년) 간 생태관광지역 지정 연평균 증가율(8.4%) 적용⁶⁾

[표 5]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 및 인증 대상 프로그램 수 전망: 2024~2030년

(단위: 건)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A)	158	171	186	201	218	236	256
인증 대상 프로그램 수 (B=A/3)	52	57	61	67	72	78	85

주: 1.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에 최근 10년(2014~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연평균 증가율 8.4% 적용

2. 인증 유효기간(3년)을 고려하여 매년 전체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1/3을 인증 대상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및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증 대상 프로그램 수 (A, 건)	61	67	72	78	85	—
인증비용 단가 (B, 백만원/건)	0.5	0.5	0.5	0.5	0.5	—
추가재정소요 (D=B×C, 백만원)	31	34	36	39	43	18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및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최근 10년(2014~2023년) 간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단위: 개소)

	2014	2015	2018	2021	2023	연평균 증가율 (2014~202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누적)	17	20	26	29	35	8.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태관광 홈페이지(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⁷⁾를 운영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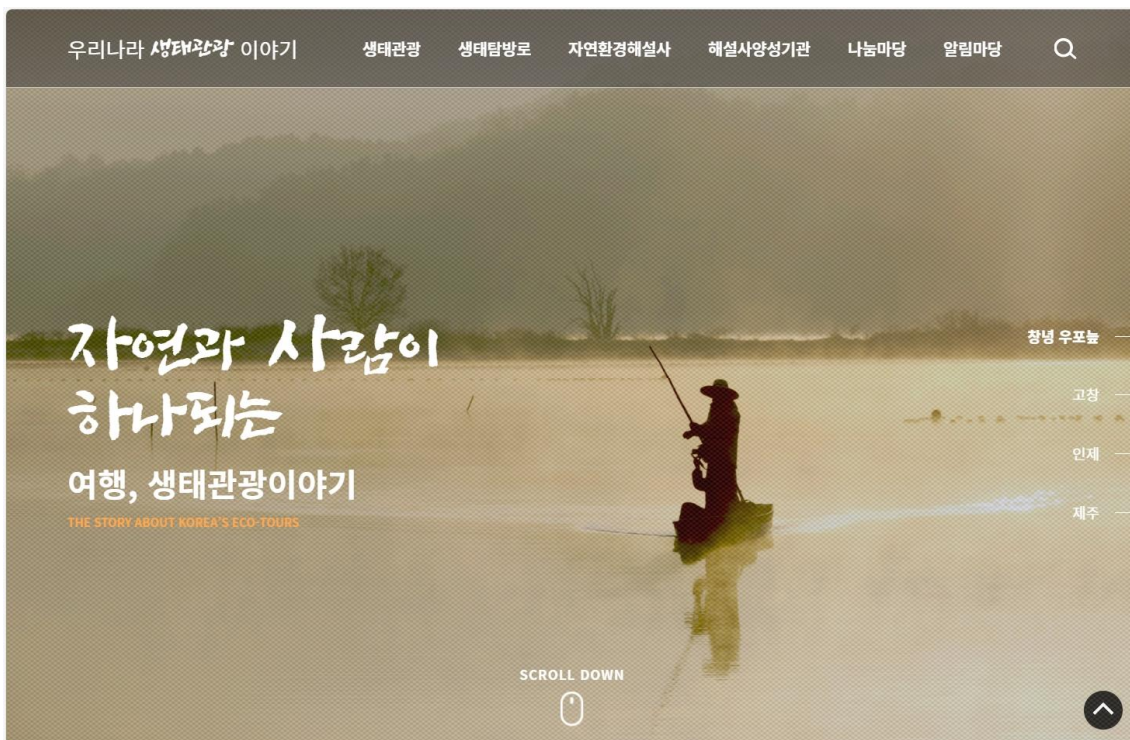
○ 매년 생태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예산은 2,000만원 규모

[표 7] 2024년 생태관광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개요

사업명	2024년 생태관광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금액	20백만원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 내 관리용역비
사업기간	‘24.3.13. ~ ‘24.9.12.
과업내용	생태관광 관련 최신 정보제공을 위한 생태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시스템, 서버 유지·관리 수행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그림 2] 생태관광 홈페이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7) 생태관광 홈페이지(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http://ecointerpreter.or.kr/>>

-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운영 평가 결과 및 우수 생태 관광프로그램 인증 현황 등을 기존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경우,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라 현행 ‘생태관광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과업 내용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비 1,000만원이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추계 결과,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생태관광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10	—	—	—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총 35개소 ('24.11월 기준)

지역	생태관광지	특징	지정년도
부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서식	'13년 (12개소)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으로 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백로, 붉은부리갈매기, 왜가리 등 서식)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가장 먼저 등록한 습지로 개느삼 등 생물자원과 두타연, 대암산 용늪 등의 경관자원을 보유	
강원 양구	DMZ	DMZ,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등 군면적의 33%가 보호지역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서식,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음	
충남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흑두루미, 황새 등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간월도·간월암 등 경관 자원 보유	
충남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유부도와 금강하구갯벌은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고, EAAFF서식지로 검은머리물떼새 등 최고의 철새도래지	
전남 순천	순천만	국내 연안습지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명승 제41호, 생태계보존지구이며,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비롯한 흰목물떼새, 방울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조류가 찾는 지역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 18종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인 불영사 계곡이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이며 2018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500여종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큰고니 등 160여종의 조류 서식, 따오기 복원사업 진행 중	
경남 남해	앵강만	팔색조 등 생물자원과 앵강만의 배꼽인 앵강다숲 등 아름다운 경관 보유. 국립공원, 군립공원 지역(금산, 호구산), 생태우수마을(두모, 가천마을), 국가명승(다랭이논)	

지역	생태관광지	특징	지정년도
제주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산림유전자원지역 등으로 지정,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보전하며 생태관광프로그램, 환경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	'14년 (5개소)
경기 안산	대부도	연중 20만마리 철새와 11종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II급종인 큰고니를 비롯한 9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수도권 대표적 철새도래지(대송습지). 대부광산퇴적암층, 탄도(누에섬) 등 경관 자원을 보유	
강원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바다·석호·습지가 어우러진 도시 속 생태관광지로 가시연, 수달, 각시수련, 샛,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산막이 옛길(4km)과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등산로(2개 코스 7.3km),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괴산호 유람선 체험과 충청도 양반길 5개 코스(21km)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폐경지로 유지된 이후 원시습지 상태로 스스로 복원된 습지로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며 수달, 담비 등 다양한 자원과 고창 고인돌유적 등을 보유	
제주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으로 쇠소깍(명승)·돈내코 등의 경관자원과 제주도롱뇽·유혈목이 등 동물자원, 효돈천 계곡 주변의 난대식물대, 활엽수림대 등 한라산의 다양한 식물자원 보유	
전남 신안	영산도	2012년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 매, 흑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 왜가리, 멧비둘기, 매사촌, 누운향나무 등 다양한 생물 자원 보유.	'15년 (3개소)
전남 완도	완도 상서마을	지방문화재 제279호인 마을 돌담길, 매봉산 탐방로, 다랭이논, 구들장논 등 자원 보유, 순환버스 등을 통해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	
광주	광주 평촌마을	멸종위기종인 남생이, 긴꼬리투구새우, 반딧불이 등 생물 4,000여종의 서식지이며, 풍암정,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평촌반디숲, 평모뜰, 풍암천 등 다양한 자원 보유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반딧불이 서식지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밤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육안관측 가능 지역. 육지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밤(Silver급) 등급.	'18년 (6개소)

지역	생태관광지	특징	지정년도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재약산 사자평 습지보호지역(고산습지), 하늘다람쥐, 은줄팔랑나비 등 산지 습지 주요 생물들의 서식처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	습지보호지역, 대암산 발원 낙동강과 만나는 국내 최대 하천형 배후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종인 큰기러기 포함 23종의 멸종위기종과 80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	
제주 제주시	저지곶자왓과 저지오름	저지곶자왓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	
강원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	
전북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전국 최고 저층형 산지습지인 월영습지 보유, 인근에 내장산 국립공원 위치, 숲길, 화전민터, 천주교 성지 등 문화역사자원 우수	
인천	백령도	맨틀포획암 문포지, 심청각, 끝 섬 전망대, 사곶사빈(천연비행장)	'21년 (3개소)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와 새호리기,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제비 외 다양한 생물 자원과 피실길 습지·화인수목원·둔주봉 한반도지형 등 경관 자원, 고인돌 선사문화공원, 배마우 장터·덕양서당·향수호수길 등 문화역사 자원 보유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겨울 철새, 연꽃 당지, 논 습지, 주남돌다리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	법정보호지역으로 정령치습지, 남원백두대간과 남원지리산 국립공원 위치	'23년 (6개소)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25번째 람사르 습지, 국내 유일 '돌리네습지' 지형, 국내 23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제주 제주시	평대리	돌오름(경관보전지구), 비자림(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구), '해안사구 및 선모살해변' 등	
충남 예산	황새공원	국내 유일 황새복원 전문시설, 황새문화관·황새오픈장·생태습지·사육장 등	
경남 하동	탄소없는 마을	지리산국립공원 지역 위치(의신, 단천 2개 마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수달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	
강원 횡성	청태 및 태기산	멸종위기종(15종) 서식,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숲채원, 자연휴양림 연계 탐방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